

창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513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4. 29.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9. 선고 2019가소27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6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트 매매계약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기구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동력수상 레저스포츠용 보트 1대(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 약 서

계약품(레저용보트 33 포물러)

금액: 3,700만 원

계약금액: 700만 원

상기물품을 상גיע약금으로 계약함을 서약함

나. 민사소송의 진행

원고는 2016. 8.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트가 '포물러 29호'임에도 마치 '포물러 33호'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트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37,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위 법원 2016가단5213 사건, 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2016.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 보트의 파손된 기계 부분을 인도한다.
2.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트에 관한 모든 분쟁은 종결되고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이후의 형사사건의 진행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트의 기계 부분을 반환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예상했던 부품 중 ‘엔진’ 부분만 확인되고, ‘스턴 드라이브’ 부분은 피고가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자, 원고는 2017. 1. 6. 고성경찰서에 ‘2016. 4.경 이 사건 보트를 정박하여 둔 고성군 당항포 선착장에서 스크루 1짝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절취 당하였다’고 도난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보트의 수리를 의뢰 받은 피고가 스크루를 차량에 싣고 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엔진 수리만 의뢰 받았을 뿐 스크루는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2017. 5. 24. 피고의 혐의를 인정할 단서가 없어 피의자가 특정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편철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18. 4.경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해 횡령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보트에 부착되어 있는 왼쪽 스톤 드라이브와 고장난 왼쪽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보트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스톤 드라이브를 처분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9. 9. 4. 피고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9고정57),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창원지방법원 2019노1903), 위 판결이 2019. 11.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트를 매수한 후 2016. 4.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트의 스톤 드라이브 및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스톤 드라이브를 처분하여 위 스톤 드라이브 시가 15,000,000원¹⁾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트를 하자 없는 선박으로 속여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보트를 운행한 바 없음에도 수리비 합계 8,262,8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보트를 ‘포물러 33호’로 속여 매도하였음에도 원고의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을 받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보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합계 28,262,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스텐 드라이브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위 각 증거와 을 5호증의 기재,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4. 19.경 이 사건 보트에서 스텐 드라이브를 분리한 후 이를 가져갔다거나, 이를 보관하던 중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보트에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주장의 수리비를 지출한 것이 피고의 매매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매매 과정이나 그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피고가 이 사건 보트의 모델을 속여 매도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조정조항 제2항의 부제소 특약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정,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

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는 위 스텐 드라이브의 시가를 10,000,000원으로 주장하기도 한다.